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74
----------	------

2025년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박성연 의원(찬성자 23명)
- 나. 제안일 : 2025년 8월 11일
- 다.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성연 의원)

#### 가.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중장년층의 역할 재정립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최근 변화된 정책 흐름과 생애주기 관점에서 '생애재설계'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중장년층의 경력설계, 건강증진,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확대·보완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 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으로 명시함(안 제1조).
- 각 조항에 “인생이모작”이라는 용어를 “생애재설계”로 일괄 변경함.
-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변경하고, 맞춤형 취업 훈련, 커뮤니티 활동 등 신규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후준비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변화된 정책 흐름과 생애주기 관점에서 ‘생애재설계’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을 확대·보완하고자 발의하였음.

###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정의 변경 등
  - 조례 제명 (안 제명):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내용 (안 제1조)
  - 정의 규정 (안 제2조)
  - 지원사업 삭제 및 신설 (안 제4조)
- 용어 정비 등
  - 용어 일괄변경 (안 제2조제2호·제3호,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제2항, 안 제6조 조제목·제1항, 안 제6조의2 조제목·각 호외, 안 제6조의3제1항·제2항, 안 제6조의4제1항, 안 제6조의5, 안 제9조 각 호외·제3호)
    - “인생이모작” → “생애재설계”
    -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 “중장년 생애재설계”
- 본 개정안은 본 조례의 “인생이모작” 대신 ‘생애재설계’ 개념을 반영하고자 조례 제명(안 제명), 목적 내용(안 제1조), 정의 규정(안 제2조) 변경 및 지원사업 삭제·신설(안 제4조), 용어 일괄변경 등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핵심 개념 등을 변경(인생이모작 → 생애재설계)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타당성, 필요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인생이모작</u>”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li>3.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란 중장년층의 <u>인생이모작을</u>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생애재설계</u>”란 ----- 와 안정적-----.</li> <li>3. ----- 생애재설계 ----- - 생애재설계를 -----.</li> </ol>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u>인생이모작 지원</u>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 ----- 생애재설계 ----- ----- --.</p>
<p>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u>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사업) ① ----- <u>중장년 생애재설계</u> ----- -----.</p>

<p>1. (생 략)</p> <p><u>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u></p> <p>3. (생 략)</p> <p>4. <u>건강증진 지원사업</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4. <u>경력설계 상담 --</u></p> <p>5. <u>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사업</u></p> <p>6. <u>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u></p> <p>7. <u>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u></p> <p>8. <u>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u></p> <p>3. (현행 제5호와 같음)</p> <p>9.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u>생애재설계</u> ----- ----- ----- -----.</p>
<p>5. (생 략)</p> <p>6. (생 략)</p> <p>② 시장은 <u>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p>	<p>3. (현행 제5호와 같음)</p> <p>9.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u>생애재설계</u> ----- ----- ----- -----.</p>
<p>제6조(<u>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u>)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p>	<p>제6조(<u>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u>) ① ----- ----- <u>생애재설계</u> -----.</p>
<p>② (생 략)</p> <p>제6조의2(<u>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u>)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 운영하는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1. • 2.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u>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u>) ----- ----- <u>생애재설계</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p> <p>1. ~ 7. (생 략)</p> <p>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u>인생이모작</u> 위원회를 둔다.</p> <p>1. · 2. (생 략)</p> <p>3.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p> <p>4. (생 략)</p>	<p>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 -- <u>생애재설계</u> ----- ----- ----- -----.</p> <p>② ----- <u>생애재설계</u> ----- ----- -----.</p>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 <u>생애</u> <u>재설계</u> -----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 ----- -- <u>생애재설계</u> ----- ----- -----.</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 ----- --- <u>생애재설계</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생애재설계</u> -----</p> <p>4. (현행과 같음)</p>
---	--

- 서울시는 2015년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2015.4.2.)하였으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장년층(40세 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현재의 제명(「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개정(2024.7.15.)하였다.
  - 본 조례에서 “인생이모작”의 정의는 조례 제정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 본 조례의 제명 및 정의 연혁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 2.] [서울특별시조례 제5839호, 2015. 4. 2., 제정]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357호, 2024. 7. 15.,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장년층</u>”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li> <li>2. “<u>인생이모작</u>”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li>3.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장년층</u>”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li> <li>2. “<u>인생이모작</u>”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li>3.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 본 개정안의 핵심은 “인생이모작” 대신 ‘생애재설계’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생애재설계”를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인생이모작” 정의와 비교할 때, 일부분만 수정(‘성공적인 노후생활’ → ‘안정적인 노후생활’)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원 목적(제2의 인생설계, 사회참여 지원 등)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복리증진, 실질적 사회참여 지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짐.

### ※ 본 조례와 본 개정안의 주요 정의 비교<sup>1)</sup>

- “인생이모작”: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생애재설계”: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관계 법령으로는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이 있으나, “생애재설계”를 정의 또는 규정한 법령은 없는 상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14개) 조례의 제명 및 정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생애재설계”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본 조례의 “인생이모작” 정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며, 본 개정안의 정의(‘안정적인 노후생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3개(광주광역시, 남양주시, 양주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조례의 제명에 “인생이모작”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57개임. (서울시 포함)

#### 〈 ‘생애 재설계’ 관련 자치법규 현황 〉

연번	자치법규명	주요 사항	비고
1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li>- 생애재설계: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u>성공적인 노후생활</u>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ul>	제정('19.6.14.) 이후 동일
2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li>- 생애재설계: 장년층이 퇴직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u>안정적인 노후생활</u> 영위를 위하여 하는 직업능력 향상 활동 및 사회 활동 등을 말한다.</li></ul>	제정('17.7.1.) 이후 동일
3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li>- 생애재설계: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u>성공적인 노후생활</u>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ul>	제정('16.6.8.) 이후 동일

1)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검색 결과, “인생이모작”(인생+이모작 합성어)과 “생애재설계”(생애+재+설계 합성어)는 사전적 용어는 아님. 다만, 개별 용어의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인생이모작”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같은 땅에서 1년에 종류가 다른 농작물을 두 번 심어 거둠’으로, “생애재설계”는 ‘살아 있는 한평생의 기간+다시 하는 (두번째)+계획을 세움’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전북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b>성공적인 노후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7.4.14.) 이후 동일
5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b>활기찬 사회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7.11.24.) 이후 동일
6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b>안정적인 노후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9.5.16.) 이후 동일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b>성공적인 노후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9.10.18.) 이후 동일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b>활기찬 사회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9.2.15.) 이후 동일
9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b>성공적인 노후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24.6.12.) 이후 동일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b>활기찬 노후생활</b>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22.3.18.) 이후 동일
11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b>활기찬 사회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6.12.30.) 이후 동일
12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b>안정적인 노후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25.2.24.) 이후 동일
13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b>성공적인 사회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6.10.12.) 이후 동일
14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및 정의에서 “생애재설계” 규정</li> <li>- 생애재설계: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b>성공적인 사회생활</b>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ul>	제정('17.7.14.) 이후 동일

- “인생이모작”과 “생애재설계” 용어는 실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미나 목적 등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인생이모작”은 특정 시점의 ‘전환’이 강조되는 개념(encore carrier)이며, “생애재설계”는 중장년(40세~65세미만)과 시니어(65세 이상)로 구분되는 은퇴기와 노후기 등의 단계별, 지속적인 ‘수정·개선’이 강조되는 개념이므로, 본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방향성에 부합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 (원안가결)과 함께 ‘생애재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 〈평생교육국 의견 회신〉

부 서 검토 의견	원안가결( <input checked="" type="radio"/> ) / 수정가결 ( <input type="radio"/> ) / 부결( <input type="radio"/> ) / 보류( <input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의 포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생애재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역할 재정립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례의 명칭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복지증진, 실질적 사회참여 지원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와 함께,
  - 서울시의 경우 본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핵심 개념(“인생이모작”)을 줄곧 유지해 왔다는 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재설계”的 정의가 “인생이모작”的 정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핵심 개념 등을 변경(인생이모작 → 생애재설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칙 규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기존 조례의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고, 용어의 일괄변경("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 "중장년 생애재설계") 중 미반영 조항(안 제3조)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회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 <u>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u>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중장년 생애재설계</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다른조례의 개정)</u> <u>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u>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부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층"이라 함은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부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례 제명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의4)
-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례 제명 개정(안 부칙 제2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74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7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례 제명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의4)
-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례 제명 개정(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한다.

안 제6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u> <u>인생이모작 지원에</u> <u>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중장년</u> <u>생애재설계 지원에</u> <u>관한 조례</u>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중장년층</u> <u>의 인생이모작 지원</u> <u>에 관한 사항을 규정</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중장년</u> <u>생애재설계 지원에</u> <u>관한 사항을 규정함</u> <u>으로써 시민이 안정</u> <u>적인 노후생활을 영</u> <u>위할 수 있도록 복리</u> <u>증진과 사회참여를</u> <u>위한 지원에 필요한</u> ----- -----.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 <u>인생이모작</u> ”란 은퇴 전후에 새로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u>생애재설계</u> ”란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p>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 -- <u>와 안정적</u>----- ----- -----.</p>	
<p>3. “<u>인생이모작</u> 지원 시설”이란 중장년층의 <u>인생이모작</u>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p>	<p>3. <u>생애 재설계</u> ----- ----- --- <u>생애 재설계를</u> ----- ----- -----.</p>	<p>(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u>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 ----- ----- ---- <u>생애 재설계</u> -- ----- ----- -----.</p>	<p>제3조(시장의 책무) -- ----- ----- <u>중장</u> <u>년 생애 재설계</u> ----- ----- ----- -----.</p>
<p>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u>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사업) ① -- --- <u>중장년 생애 재설계</u> ----- ----- ----- ----- -----.</p>	<p>(개정안과 같음)</p>
<p>1. (생 략) 2. <u>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u></p>	<p>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p>

<u>3. (생 략)</u>	<u>2. (현행 제3호와 같음)</u>	(개정안과 같음)
<u>4. 건강증진 지원사업</u>	<u>4. 경력설계 상담</u> --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5.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사업</u>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u>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7. 중장년층 적합 일 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u>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8. 사회적 고립 방지</u> <u>를 위한 커뮤니티</u> <u>활동 지원사업</u>	(개정안과 같음)
<u>5. (생 략)</u>	<u>3. (현행 제5호와 같음)</u>	(개정안과 같음)
<u>6. (생 략)</u>	<u>9. (현행 제6호와 같음)</u>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u>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 <u>생애재설계</u> ----- ----- ----- ----- -----.	(개정안과 같음)
제6조( <u>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u> )	제6조( <u>생애 재설계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u> )	(개정안과 같음)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	① ----- ----- ----- <u>생애 재설계</u> -----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2(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u> )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 운영하는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의2( <u>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u> ) -- ----- ----- <u>생애재설계</u> ----- ----- ----- -----.	(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 · 징수) ① 시장은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된 사용료 등은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 · 징수) ① ----- <u>생애재설계</u> ----- ----- ----- ----- ----- ----- -----. ② ----- ----- <u>생애재설계</u> -----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p>하여 중장년층 <u>인생</u> <u>이모작</u> 위원회를 둔다.</p> <p>1. · 2. (생 약)</p> <p>3. <u>인생이모작</u> 지원 시설에 관한 사항</p> <p>4. (생 약)</p>	<p>----- <u>생애</u> <u>재설계</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생애재설계</u> ----- -----</p> <p>4.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생이모작”이란”을 ““생애재설계”란”으로, “ 및 성공적”을 “와 안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인생이모작을”을 “생애재설계를”로 한다.

제3조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강증진”을 “경력설계 상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5.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
7.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제6조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인생이모작”을 각각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5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인생이모작”을 각각 “생애재설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약)</li> <li>2. “<u>인생이모작</u>”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li>3.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란 중장년층의 <u>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u>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생애재설계</u>”란 ----- 와 <u>안정적</u>-----.</li> <li>3. <u>생애재설계</u> ----- <u>생애재설계를</u> -----.</li> </ol>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중장년</u></p>	<p>제3조(시장의 책무) ----- <u>중장년</u></p>

총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생 략)

4. 건강증진 지원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생 략)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  
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  
다.

생애재설계 -----  
-----  
-----.

제4조(지원사업) ① ----- 중장년  
생애재설계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경력설계 상담 --

5.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  
업

7.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  
니티 활동 지원사업

3. (현행 제5호와 같음)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생애재설계 -----  
-----  
-----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1. · 2. (생 략)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제6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  
생애재설계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 -----  
----- 생애재설계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 생애재설계 -----  
-----  
-----  
-----  
-----.

② -----  
- 생애재설계 -----  
-----  
-----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  
-----

<p>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p>	<p>-----  <u>생애재설계</u> -----      -----.      1.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      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      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      -----  <u>생애재설계</u> -----      -----      -----.      제9조(위원회의 설치) -----      -----  <u>생애재설계</u> -----.</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u>인생이모작</u> 위원회를 둔다.</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      -----  <u>생애재설계</u> -----.      1. · 2. (현행과 같음)</p>
<p>1. · 2. (생 략)      3.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생 략)</p>	<p>3. <u>생애재설계</u> -----      4. (현행과 같음)</p>